보건복지부	보도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7.(토) 조간 / 2026. 11. 6.(금) 12:00 배포 2026. 11. 6.(금)

환자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위한 생애 말 의료·돌봄 공론화 착수

- 의료혁신위,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최(11.7.~11.8.) -
- 연명의료 유보·중단시점과 대리결정 주체, 생애 말 의료·돌봄 지원 방안 논의 -
- 전문가 발제, 분임 토의 결과 등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**의료혁신위원회***(위원장 정기현)는 **11월 7일(토)**부터 **8일(일)**까지 이틀간 **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**에서 **「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」**를 **개최**한다고 밝혔다. **토론회**에 **참여**한 약 300명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1박 2일간 **연명의료 유보·중단 시점**과 **대리결정 주체**, **생애 말 의료·돌봄 지원 방안**을 **논의**한다.

*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

의료혁신 시민패널은 **국민**의 **다양한 의견**을 **의료혁신 논의**에 **반영**하기 위해 **성별·연령·지역** 등을 **균형 있게 고려**하여 모집한 **약 300명**의 **국민 대표 참여단**이다. 지난 7월 **'지역·필수의료 소생'**을 주제로 한 **제1차 공론화**를 시작으로 **온라인 심층 토의**, **온라인 정책 제안** 등 **다양한 방식**으로 **의료혁신 논의**에 **참여**해 왔다.

이번 공론화에서는 **생애 말 환자**의 **자기결정권**과 **존엄성**을 **존중**하면서 **필요한 의료**와 **돌봄**을 **제공**하기 위한 **제도적·사회적 과제**를 **논의**한다. 특히, **연명의료 유보·중단 시점**, 환자가 **직접 의사**를 **표현**하기 **어려운 경우**의 **결정 절차**, **생애 말 의료·돌봄 지원 방안** 등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**시민패널**의 **다양한 경험**과 **의견**을 **수렴**할 예정이다.

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**전문가 발제**와 **질의응답**, **분임 토의**, **토의 결과 전체 공유**를 통해 세 가지 의제를 차례로 논의한다.

첫째 날에는 **'연명의료 유보·중단의 시점'**을 주제로 논의한다. 시민패널은 먼저 **연명의료결정**과 관련한 **사례**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**경험**을 **공유**하는 시간을 갖는다. 이후 **현행 제도**처럼 **임종 과정**에 들어선 뒤에 **연명의료**의 **유보·중단**이 **가능**하도록 **유지**하는 입장과, 그 시점을 임종 과정에 진입하기 이전인 질병의 **말기까지 확대**하는 입장에 대해 각각 **전문가 발제**가 이루어진다. 시민패널은 **전문가 발제**와 **질의응답**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본 뒤, **분임 토의**에서 **연명의료 유보·중단의 시점**에 대한 **의견**과 각 입장에 따른 **우려사항**을 논의하고 그 **결과**를 **전체 시민패널**과 **공유**한다.

둘째 날에는 **'연명의료 대리결정의 주체'**와 **'생애 말 의료 및 돌봄'**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.

먼저 **현행 가족 중심**의 **연명의료 대리 결정 방식**과 **변화 필요성**에 대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의견을 나눈다. 이어 **가족 외**의 **사람**에게도 **대리결정 권한**을 **부여**할 경우 그 **범위**를 **어떻게 정할 것**인지, **환자**의 **의사**를 **확인할 수 없고 대리결정**을 **할 사람도 없는 경우**에는 **누가 결정**하도록 할 것인지 등 **필요한 절차**와 **보호장치** 등을 논의한다.

이후에는 **'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환자**에게 **필요한 의료**와 **돌봄'**을 주제로, 환자가 **생애 말**을 **보내는 장소**와 이를 **뒷받침하기 위한 의료·돌봄 지원 방안**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. 끝으로, 둘째 날 **분임 토의 결과**를 **전체 패널**과 **공유**하며 이틀간의 **숙의**를 **마무리**한다.

개·폐회식과 **전문가 발제**, **분임 토의 결과 공유** 등 주요 내용은 **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**을 통해 **생중계**하여 **국민 누구나 시청**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다만,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충분한 숙의를 위해 **분임 토의**는 **비공개**로 진행한다.

의료혁신위원회 산하 **시민패널 운영위원회***(위원장 김학린)는 이번 **공론화 결과**를 **정리**하여 **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**에 **보고**할 예정이며, 해당 결과는

생애 말 의료와 **돌봄 강화**를 위한 **의료혁신 논의**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내 **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**에 **활용**할 예정이다.

*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,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내 설치된 기구

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"**생애 말 환자**의 뜻을 **존중**하고 **필요**한 **의료**와 **돌봄**을 **충분히 제공**하는 것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"라며, "이번 공론화를 통해 **국민**의 **다양한 의견**을 **경청**하고, **환자**의 **존엄성**과 **자기결정권**을 **존중**하면서도 **필요한 보호**와 **지원**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정책적 과제**를 **살펴보겠다**"라고 밝혔다.

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"**생애 말 어떤 의료**와 **돌봄**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**가치관**과 **경험**에 따라 **생각**이 **다를 수 있는 만큼**, 서로의 **의견**을 **존중**하며 **충분히 논의**하는 **과정**이 **중요**하다"라며, "이번 토론회가 **시민패널**의 **다양한 경험**과 **생각**을 나누고, **우리 사회**에 **필요**한 **생애 말 의료**와 **돌봄**의 **방향**을 **함께 모색**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"라고 말했다.

<붙임> 1.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요
2.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	책임자	과 장	박광훈 (044-202-188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민 (044-202-1883)
<연명의료>	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	책임자	과 장	모두순 (044-202-2450)
		담당자	사무관	안현빈 (044-202-2455)

붙임 1 **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 개요**

□ 개요

○ (행사명)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위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

○ (일시·장소) 11. 7. (토) ~ 8. (일),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

* 분임토의 외 전체 일정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

<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QR코드 >

1일차	2일차

○ (주요 참석자) 제2차관, 의료혁신위원장 및 의료혁신위·시민패널 운영위 위원, 의료혁신추진단장·부단장 등

□ 세부 일정

구분	시간	행사 내용		비고
1일차	13:00 ~ 13:25	개회식		유튜브 생중계
	13:25 ~ 15:20	세션1 (연명의료 유보·중단의 시점)	전문가 발제 및 질의응답	유튜브 생중계
	15:20 ~ 17:40		분임토의	-
	17:40 ~ 18:30	세션1 결과 공유		유튜브 생중계
2일차	09:30 ~ 11:10	세션2 (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)	전문가 발제 및 질의응답	유튜브 생중계
	11:10 ~ 14:20		분임토의	
	14:20 ~ 15:40	세션3 (생애 말 의료·돌봄)	분임토의	-
	15:40 ~ 16:00	세션2, 3 결과 공유		유튜브 생중계
	16:00 ~ 16:30	폐회식		유튜브 생중계

붙임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

□ 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○ **임종과정**에 있는 환자가 **무의미한 연명의료***를 **시행하지 않거나 중단**할 수 있는 **절차를 마련**하여 **삶을 존엄하게 마무리**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

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서,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

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

○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 위해서는 **❶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**과 **❷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 확인**이 필요

- **(임종과정 판단) 담당 의사**와 해당 분야 **전문의 1인**이 판단(총 2인)
- **(의사 확인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**를 확인하거나, 환자가 **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** 의향서·계획서도 없는 경우 **가족 확인***

* 환자가 이전에 일관하여 표시한 의사에 대해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을 확인하거나, 환자 의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 합의 통해 결정

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】



< 주요 용어 >

☞ **(사전연명의료의향서)**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

☞ **(연명의료계획서)**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

☞ **(말기환자)**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(통상 수개월 내)

☞ **(임종과정)**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,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(통상 수일 내)